

쉽게 배우는 환경법

2차시. 환경정책수단 및 환경피해구제

1.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1.1. 사전배려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미래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들을 통하여 모든 행위주체들이 환경보존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구체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특히 안전확보의 관점에서 위험에 대비한 사전배려 및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자원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사전배려를 요구하는 원칙으로 해석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는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존속보장의 원칙

존속보장의 원칙은 환경보호의 목표를 현상의 유지 및 보호에 둔다는 점에서 악화금지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환경상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관리 및 자원의 배분을 통해 결국 추가적인 환경부담을 허용하기 쉬운 사전배려의 원칙보다도 환경상태의 악화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엄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는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 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존속보장 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1.3. 원인자 책임의 원칙

원인자책임원칙이란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환경비용부담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보호에 있어서 비용귀속의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효율성의 기준이 된다. 원인자 책임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원인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특정된 개념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누가 원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보다도 환경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입법형성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인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지역 사회 및 국가는 환경보존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부과되어 있고 따라서 지역 및 공간질서행정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생활의 환경오염이라는 범주안에서 원인자라고 하는 범주안에는 생산자, 소비자,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오염의 직접수해자가 포함 될 수 있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고,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나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한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개선촉진법에 의한 오염부담금제도 등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1.4. 협동의 원칙

협동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의 관리·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 사업자등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환경보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환경보전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력은 국가기관 사이의 협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외에 공공단체와 국민·주민, 그리고 전문가간의 협력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협동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및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협동의 의무에 상응하

는 권리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의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과정과 입법과정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및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1.5.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환경의 보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시행되는 개발, 즉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고갈시키지 아니하면서 하는 발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의 보전과 함께 자연자원의 보존과 세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오(Rio)선언과 21세기 행동강령에서 천명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서는 "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입법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2. 환경보호의 수단

2.1. 환경계획

환경계획이란 환경보전을 위해 사전에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과 관련된 제반 문제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행정수단을 결합시키는 미래형성적인 환경정책수단 및 그 결과를 말한다. 현행법상 계획에 의한 환경보전은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은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의 모델에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장기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구속력이 대국민적 관계에 미치지 않는 행정구속적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및 시·도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중·대권역으로 구분된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의 수립의무를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규정된 각종 계획과 자연환경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상시측정을 위한 측정망설치 계획도 이러한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이 구체화된 내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전체공간계획에 의한 환경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토종합계획을 들 수 있는데, 다만 이는 행정구속적인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목표설정 및 대국민적 방향 제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이외에도 전문계획에 의한 환경보호가 가능한데 하천법상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기본계획·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등이 있다.

2.2. 환경기준

환경기준(environmental Condition)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지될 것이 요청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항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모든 환경대책의 잣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환경악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환경기준을 강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삼아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측에서는 생산비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물가인상 등 일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기준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서 배출기준이 있다. 배출기준(Emission Standards)이라 함은 배출설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또는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 배출기준은 오염규제법상의 강제조치의 한계가 되며, 부과금을 과하는 기준이 된다. 배출기준에 의한 오염규제는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배출을 억제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에 따라 농도규제와 총량규제가 있다. 이와 같은 배출기준의 법적성격은 환경기준과는 달리 언제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환경기준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든 아니든 그 기준의 직접 수범자는 행정기관인데 반하여 배출기준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개인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2.3.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사전배려 또는 예방의 원칙을 배경에 둔 효과적인 환경보전수단의 하나로서,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입안이나 공사실시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나 정도, 환경과피의 방지책, 대체안의 비교검토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첫째, 각종 사업의 계획의 입안이나 공사중에 행하며 둘째,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및 정도의 파악과 예측을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행하고, 셋째, 가능하면 복수의 계획안이나 공사시안중에서 평가하여 최선의 안을 선정하며, 넷째, 선정된 계획이나 공사에 대하여도 환경과피를 가져올 사업의 내용이나 부분이 발견되면 변경이나 대책을 강구하면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 등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첫째, 사업의 계획결정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사업자가 배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과 관계지역주민의 참여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들의 의견을 사업계획결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관계지역주민의 이해 위에 적정한 수행을 확보하는데 있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의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원화에 따른 중복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협의내용을 분야별로 단일화 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고 있다(2012. 7. 22). 즉 환경평가제도를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3분하였으며,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행정계획은 전략영향평가를,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조정되었다.

2.4. 개별적 법적 규제수단

첫째, 신고, 등록, 표시 등 의무부과는 결국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으면서 환경규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가와 허가를 통한 환경보호는 법률에 의한 허용유보부 금지를 의미하며 이것은 다시 일정한 행위의 법령위배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 때 이를 허용하는 예방적 금지와, 반대로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금지를 해제하는 억제적 금지로 나뉠 수 있다. 예컨대, 환경보전관계법상의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가 예방적 규제허가로서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는 공법상 특별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일종의 특허 성질을 지닌 것으로 대체로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배출규제를 위한 명령·제재는 배출허용기준 등과 같은 환경기준을 매개로 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해지는 이른바 배출규제조치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와 같은 규제는 일정한 행정제재적 성격을 갖는 명령·조치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이 확보되고 있다.

넷째, 행정벌은 환경보호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과태료 같은 행정질서법과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행정형벌을 포함한다. 특히 행정형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본 각종 실행수단과는 구별된다.

2.5. 경제적 유인(규제)수단

경제적 규제는 환경보전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수단은 오염원에게 오염량 감축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며, 정부가 아닌 개별 업체들이 오염 통제정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먼저, 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부과금이란 경제유인적 규제방식이 결합된 일종의 초과배출부과금제(non-compliance charge system)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배출부과금제도와 비슷하나 사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오염권, 즉 오염배출권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수질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에 일정양의 오염물을 배출 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이 공개시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매입된 오염배출권은 기업간에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은 배출권매입비용과 오염의 자체처리비용을 비교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이나 탄소배출권 등이 현재 시행되거나 예정중에 있다. 셋째, 보조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오염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총칭한다.

3. 환경침해 및 구제수단

일반적으로 환경침해의 구제수단으로는 ① 직접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타협하거나, ② 진정·민원처리제도를 통해 관계행정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려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규제개입 등을 요청하거나, ③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④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것 등이 있다. 법상 특히 의미있는 것은 행정구제(③)와 사법구제(④)이다. 다만 ④의 사법구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민사상의 구제(civil remedy)이다. 민사상의 구제는 주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지청구(injunction)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환경분쟁의 여러 특성이 대부분 불법행위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전통적인 불법행위원리는 고의·과실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3.1.1. 과실론

환경분쟁에서는 근대법상의 과실책임주의로서는 피해자구제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다만 오늘날 무과실책임의 귀책근거로서 위험책임설이 유력한데, 위험책임(Gefahrdungshaftung)이란 어떤 기계 그 밖의 기술적인 시설, 위험한 물질, 기타 유형화된 위험원천으로부터 위험이 현실화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그 위험원천의 점유자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과실의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현행법상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광업법(제91조)에서 광업으로 인한 피해(광해)에 대하여, 수산업법(제82조)에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그리고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에서는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4조)에서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각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1.2. 인과관계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피해의 경우에는 원인물질 및 원인자의 특정이나 원인물질의 도달경로의 명확화 등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환경소송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학설·판례에 의하여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어 왔다. 먼저, 개연성이론은 “원고는 인과관계의 존재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고, 피고는 반증으로써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견해로서,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설에 의하면, 피해자는 확실성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개연성 정도의 입증을 하면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되어 법관에게 인과관계 존재의 심증을 형성시켜 주게 된다.

3.1.3. 복수원인자 공동불법행위

현행법상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한 오염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계당사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관계당사자 상호간에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분담함으로써 전 손해를 배상한 자는 다른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타당하다. 이 때 가해자는 자기의 배출물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일부에 한하여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3.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국가나 공공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행정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도시계획·도시재개발 등 각종 계획행정 및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가나 공공단체의 계획행정이나 개발사업이 직접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의무 지워진 환경규제작용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환경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환경침해를 가져올 행정계획 내지 개발사업의 취소를 구한다거나 위법·부당하게 방치되고 있는 일정한 환경규제작용의 시행을 요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둘러싼 행정쟁송(또는 사법심사)의 제기에는 원고적격·쟁송대상·제소시기 및 심사의 기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3.3. 환경분쟁조정제도

소송 등의 일반적인 환경분쟁구제수단은 환경분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가장 기본인 당사자 사이에서의 해결을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환경분

쟁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바로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구비한 행정기관이 제3자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상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고 서로 양보케 하여 분쟁의 성립을 주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를 설득하고, 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상 구제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환경분쟁의 해결에 행정권을 개입시킨 행정상의 절차이다. 즉,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일종의 행정위원회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알선·조정·재정등의 절차를 통하여 환경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 당사자사이의 양보와 화해로써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탄력적인 대응능력,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과학장비와 유능한 인력들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분쟁 등 소관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기구이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을 구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 환경분쟁 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을 말한다.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먼저, 알선이란 일반적으로 분쟁의 해결이나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를 매개하여 그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알선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서서 쉽게 교섭되도록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있어 알선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인 이내의 알선위원이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7조·제28조). 일반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중개인이나 조정인이 중개나 조정을 행함에 앞서 혹은 이와 동시에 알선을 하게 되므로 대부분 알선 등의 행위는 중재나 조정 속에 포함되어 버리게 된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법은 노동쟁의조정법과 같이 알선을 중재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선인의 권한이 보통의 분쟁조정에서의 일반적인 개념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셈이다.

둘째, 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양보에 의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로, 제3자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은 성립되었다고 하고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끝맺게 되므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의 자유가 최종단계에서 인정되는 자주적 해결방안이다.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33조). 이 합의는 민사상의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로 되지 못하므로, 합의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에 따른 이행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정이라 함은 재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준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엄격한 민사소송절차보다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재정위원회가 분쟁에 관련된 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알선이나 조정과는 다르며,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 등에서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재판에 준하는 엄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제공자인 가해자들에게 대해서도 분쟁의 원인이 된 환경피

해를 회피 및 방지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환경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통한 미봉책을 넘지 못해 오히려 일종의 면죄부 같은 기능을 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그 배상액 기준의 현실화,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결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보다 중요한 환경분쟁의 실질적 조정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향후 강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환경부 웹사이트 <http://www.me.go.kr/>
- 김홍균, 2010, 환경법, 홍문사
- 이순자, 2012, 환경법, 법원사
- 박균성, 함태성, 2012, 환경법, 박영사
- 환경부, 2010, 2011 환경백서